

충주시의회 제170회 임시회
2012. 9. 19(수) 11:00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비 고
1426	(1)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7	(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09.10	2012.09.10	2012.09.18	2012.09.18	세정과장
(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09.10	2012.09.10	2012.09.18	2012.09.18	세정과장

2. 제안설명요지

(1)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15호]이 2012. 7. 11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금고 관련 조례를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필요 조항 신설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와 금고의 협력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안 제4조제3항)
 - *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준수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의 단서 신설(안 제5조제3항)
 -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외
 - 민간전문가 과반수 포함

- 별표(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
 - 지역조합(2금융권)의 금고(기금, 특별회계) 참여 허용과 관련한 평가기준 마련(별표안 제1항목)
 - 시 자율항목(배점) 축소(15→10점)
 -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 개선
 - “관내지점의 수”에서 금고 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하도록 함(별표안 제3항목)
 - 신규 금융기관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현행 “실적 및 계획” 항목을 같은 배점 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별표안 제5항목)

(2) 총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1년 시행된 「말산업 육성법」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사항이 규정되고, 그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결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정하여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에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수수료 신설
 -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 30,000원 / 1건당
 - 농어촌 승마시설 변경신고 : 10,000원 / 1건당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이 2012년 7월 11일자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에는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시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협력사업비 운영과정의 부패유발소지를 제거하고,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제3항에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 밖에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있어서는 별표안 제1항목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에 한하여 지역조합의 금고운영 참여를 허용도록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역조합(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별표안 제3항목과 제5항목에는 기존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지점의 수”에서 금고 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하고

신규 금융기관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현행 “실적 및 계획” 항목을 같은 배점 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시 자율항목의 배점은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되어 기존 세부항목(90점)에 시 자율항목인 대손충담금 적립율(2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지방세 수납실적(3점), OCR·전자수납 센터 운영능력과 계획(2점)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에는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3점,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주민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기여도 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8점,
자치단체와의 협력 10점 등으로 배점되어 있던 것을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2점,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주민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기여도 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9점,
자치단체와의 협력 10점 등으로 배점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사항이 규정되고, 그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결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는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에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에는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변경신고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수수료의 산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업과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내용과 시설기준이 유사하여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의 신고와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에 준하여 신고시 1건당 3만원, 변경신고시 1건당 1만원을 책정하였음
- 검토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와 변경신고에 대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수료 산정이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 답변 요지

(1)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가급적이면 복수금고로 하는 것이 충주시 재정관리나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지 않는가?

○ 답변 : 현 조례에도 복수금고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도 할 것임

▶ 질의 : 전산시스템이나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배점을 더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답변 : 전국 보편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평가기준은 철저하게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랐음.

▶ 질의 : 청주시의 경우 복수 금고로 운영하고 있나?

○ 답변 : 현재 청주는 단수 금고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시 1건당 30,000원, 변경신고시 1건당 10,000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 답변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업의 신고와 변경신고시의 수수료를 인용하여 책정하였음.

5. 심사결과

(1)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